

『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박교상 의원 외 10인

2. 제안이유

-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중한질병, 구금, 화재 가정폭력 등 각종 재해 및 사고, 질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해
- 긴급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“저소득주민”등 동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이 조례의 지원대상자는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함(안 제3조)
- 긴급지원방법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긴급지원금을 피지원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 행함(안 제4조)
- 지원신청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(안 제5조)
- 시장은 매년 피지원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
- 지방자치법 제13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각종 재해 및 사고, 질병 등의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과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조례는 총 9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, 용어정의를 규정하고
- 안 제3조 지원대상자는 화재, 수해 등 각종 재해와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,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하게 일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함
- 안 제4조 긴급지원금은 피지원자에게 직접 지급하며,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
- 안 제5조 및 제6조 긴급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및 그 친족, 기타 관계인이 할 수 있으나, 필요한 경우 직권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
- 안 제7조 피지원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 사유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함

○ 검토결과

- 예상치 못하는 각종 재해 및 사고,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, 상위법에 의거 지원대상,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명문화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 임
-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만성적 실업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